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·의결

안	건 병	번 호	제2022-014-121호 (사건번호 :	)	
안	건	명	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	대한 시정조치에	관한 건
피	심	인	(사업자등록번호 :	)	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2. 9. 14.

# 주 문

1.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3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- 2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.
  - 가.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.
  - 나. 금번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 이 유

#### 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「지방자치법」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(이하 '보호법')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.

#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직원 수

## Ⅱ. 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조사( )를 통해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.

# 1. 행위 사실

# 가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알 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나,

청소년수련관 시스템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알고리즘(MD5)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사실이 있음

#### 2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관련법 규정

가. 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다.

나.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,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다.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-2호)」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.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, 제2항, 제3항,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 (고 시 제7조제5항)

#### 2. 위법성 판단

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나,

피심인이 청소년수련관 시스템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알고리 즘(MD5)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것은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제1항제3호,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제2020-2호, 이하'고시') 제7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# Ⅳ. 처분 및 결정

#### 1. 과태료의 부과

피심인은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 「과태료의 부과기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 가. 기준금액

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.

# < [별표2] 과태료의 부과기준 >

OLUMPIO)		과태료 금액 (단위 : 만원)		
위반행위 	근거 법조문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자. 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 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 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6호	600	1,200	2,400

#### 나. 과태료의 가중

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1. 1.27. 제정, 이하 '과태료 부과지침') 제8조(과태료의 가중)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#### 다. 과태료의 감경

피심인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시정완료했고,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의 50%인 300만원을 감경한다.

#### 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총 **300만원**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☞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, 100분의 20을 감경함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)

### 2. 시정조치 권고

보호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.

가.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제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.

나. 금번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 Ⅴ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 (과태료)제2항제6호 및 제64조(시정조치 등)제4항에 따라 과태료, 시정조치 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시정권고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「행정심판법」제27조 및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.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 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 다.

# 2022년 9월 14일

위	원 장	윤 종 인	(서 명)
위	원	강 정 화	(서 명)
위	원	고 성 학	(서 명)
위	원	백 대 용	(서 명)
위	원	서 종 식	(서 명)
위	원	염 흥 열	(서 명)
위	원	이 희 정	(서 명)
위	원	지 성 우	(서 명)